세무와회계저널 : 제1권 1호(2000년 5월).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ol.1, No.1(May 2000).
pp.125~142.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 규 언 · 고려대 국제정보경영학부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지주회사 관련 과세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과세제도와 관련된 세법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조직의 탄력성 제고,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의 강화, 위험의 분산과 차단 등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그 설립이 규제되어 오다. 1999년 2월 5일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계열사간 주식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제도, 기업분할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제도,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중복과세의 조정문제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비용 인정문제가 검토되었다.

지주회사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 지분율 기준의 임의성이다.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다면, 지분율에 따라 차등 조정할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자회사 지분율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차등하고 싶다면, 80%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지분율을 곱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너무 엄격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가 되기까지는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부채비율 100%이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되고,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산입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분율이 30%인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산입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회사가 부담하는 지주회사 관리비용은 실제 발생액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의 목적이 자회사의 관리이고 이러한 고유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주회사세제, 배당소득중복과세, 양도소득 과세이연, 이중과세조정

Ⅰ. 서론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소수의 자금으로 다수의 회사를 순차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 2월 5일의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1999년 2월 5일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1] 먼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여(공정거래법 제2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서만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였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였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① 부채비율이 100% 초과금지, ②자회사 주식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이상 보유의무, ③자회사 이외의 지배목적 주식취득 금지, ④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⑤비금융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⑥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목적 주식소유 금지(손자회사 지배금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채무보증 해소 등의 제한을 두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8조의 3).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를 이용한 경영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주회사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말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계열사간 주식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의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

1) 우리 나라에서 설립된 순수지주회사로는 가스사업과 관련한 1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엔론, 케이블 방송사업을 하는 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씨엔엠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며, 동양그룹은 1999년 말에 그룹내의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동양금융지주주식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리젠트그룹이 대유리젠트증권, 해동화재, 경수종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지주회사로 코리아온라인홀딩컴퍼니사가 있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지원

1 계열사간 주식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세제지원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동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하는 회사는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② 주식 또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만일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월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주식을 출자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 공동출자해도 관련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이연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

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이렇게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방법은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취득가액을 신설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또한 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대체취득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이를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6항).

2. 기업분할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회사를 신설하고, 스스로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의 자산 중 일부가 승계받는 법인으로 이전되고, 그 지분에 대한 권리가 분할회사로 이전되어 분할회사의 투자자산을 구성한다. 물적분할은 현물을 출자하고 그 지분을 분할회사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유사하나, 분할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의 당연 포괄승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현물출자와 차이가 있다.

물적 분할은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승계받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할회사는 자산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은 동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라.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②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주식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기업분할 시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은 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해당되는 과세지원제도는 아니고, 요건을 만족하는 일반적인 기업분할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다[2].

3.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2) 기업분할 중 분할대가인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분할회사의 주주가 받는 인적분할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105조 6항).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8호).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Ⅲ. 배당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문제

1. 현재의 우리나라 세법상 조정방법

가. 개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원이다. 만일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자회사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지주회사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므로, 동일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지주회사 설립의 주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였으며, 이 문제는 1999년 12월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익금불산입의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임퓨테이션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없으므로, 일반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있지 않으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익금불산입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표 1〉 현행 세법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구 분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인주주		〈임퓨테이션방식〉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19%)을 익금산입후, 배당소득의 19%를 배당세액공제함
법인주주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 • 지분비율 80%(상장·등록은 30%)초과: 90% 익금불산입 • 지분비율 50%-80%*: 60% 익금불산입
	기타 법인주주	배당소득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없음

*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래의 라. 익금불산입 되는 배당소득금액 참조).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단,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 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 후 4월 이내에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12월 말 법인으로 지주회사 전환의 신고기한이 12월말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 자회사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 첫째,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배당과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라. 익금불산입 되는 배당소득금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익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다르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를 익금불산입 한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지분비율이 50% 이상이고, 8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60%를 익금불산입 한다.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포함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산입되는 자회사의 범위(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지분율 30% 초과)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일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거나, 자회사가 타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 제6항).

$$\text{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지주회사의 차입금}}{\text{지주회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text{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text{배당소득금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90\% 또는 60\%)} \times \frac{\text{자회사가 타법인에 출자한 주식등의 가액(1\% 이상)}}{\text{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등의 가액}}$$

2. 외국의 배당소득 중복과세 조정방법

가. 영국

영국에서는 1972년부터 임퓨테이션제도를 채택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임퓨테이션제도에 선납법인세(Advance Corporate Tax: ACT)라는 독특한 제도가 추가되어 운용되어 왔었다. 즉, 법인에 대한 특별감면 등으로 실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퓨테이션제도를 통하여 배당세액공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불할 때는 20/80의 세율로 계산한 선납법인세를 납부한다. 개인은 수취배당금에 선납법인세로 납부한 20/80을 gross-up으로 가산하여 과세소득에 산입하며, 산출된 세액에서 gross-up과 동액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소득세 산출세액 보다 선납법인세가 큰 경우, 그 초과액은 환급 가능하다.

선납법인세는 배당이 이루어진 회계기간의 법인세액과 상계할 수 있다. 즉, 정상적으로 계산된 법인세에서 선납법인세를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게 된다. 선납법인세액이 당해 회계연도의 정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이내의 소급공제(carryback)가 가능하고, 이월공제(carryover)는 무한정 인정된다(조용준 1999).

1999년부터 이러한 선납법인세 제도는 폐지되었다. 기존에 존재하는 선납법인세 이월액(surplus ACT)[3]은 shadow ACT system이라 불리는 제한적인 제도 내에서 기업의 법인세 채무를 감소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Gammie 1999).

선납법인세 제도의 폐지로 인한 조세수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기업은 예상되는 법인세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분납하도록 규정하였다. 대신 중소기업은 회계기간 경과후 9개월 뒤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1999년 4월 이후 배당세액공제율은 20%에서 10%로 감소되었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보통세율은 10%로 변경되었다. 기본세율(또는 그 이하)을 적용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으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주는 32.5%의 특별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되지 않는 주주(연금펀드,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가)는 더 이상 배당세액공제를 할수 없도록 하였다.

영국내 소재하는 법인이 영국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선납법인세를 납

3) 1999년 4월 현재 surplus ACT는 £7billion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hennells et al. 1999).

부하지 않고 수취배당 전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나. 독일

독일은 1977년부터 임퓨테이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EC 회원국 중에서 제일 먼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였다(조용준 1999). 독일은 법인소득 중 유보부분과 배당부분에 대하여 차등세율로 과세하는 split-rate system과 배당에 대해서는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합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즉, 법인단계에서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40%의 고율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배당분에 대해서는 30%의 저율의 법인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30/70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gross-up으로 배당소득에 가산한 후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세액에서 배당에 대한 30/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게 된다.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환급받는다. 이러한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은 법인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한국조세연구원 1996).

그러나 2001년부터 시행되는 Tax Reform 2000에서는 내국법인의 유보부분에 대하여 40% 세율로, 배당부분에 대하여 30% 세율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40% 세율로 차등 과세되던 법인세율이 25%로 통일되어 적용된다. 또한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폐지되고,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은 100% 비과세하고,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KPMG Germany 2000).

다. 프랑스

프랑스는 개인이 국내회사로부터의 받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금액의 50%를 귀속법인세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배당금액의 50%를 gross-up으로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배당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한다. 프랑스는 법인세율이 법인소득의 1/3인 33.33%이므로 법인세 납부 후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 비율은 50%가 되고 (33.33/66.66=50%),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100% 조정되는 셈이다.

비과세 또는 경감과세된 법인소득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배당이전에 33.33%에 미달하는 세금을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고 50%의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따라서 법인단계에서의 조세혜택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경우 사라지게 된다.

법인간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있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95%를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5%만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배당이 5%는 자회사의 지분보유와 관련하여 모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의 가액이 1억 5천만 프랑 이상이어야 한다. 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포기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이성봉 1999).

라. 일본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은 일정한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완화되고 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총과세소득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소득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의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보다 배당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환급하지 않는다(조용준 1999).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수입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하고, 20%만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총발행주식의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액 100% 모두를 익금불산입한다. 만일 법인주주에게 부채가 있어 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이자×(해당 주식의 평균장부가액/평균총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한다(이성봉 1999).

마. 미국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이중과세문제는 조정장치가 전혀 없다. 즉,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이익이 개인에게 배당되면 다시 개인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대신 유보이익과 배당에 대하여 차등 과세함으로써 간접적인 조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5%에서 39%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합리적인 사내유보를 초과하는 초과유보이익에 대해서는 39.6%의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법인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인 배당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

인간 배당에 대한 다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70-100%를 소득에서 차감하고 있다. 20% 미만의 지분율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7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며, 지분율이 20-80%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80%를,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배당하는 법인과 배당받는 법인이 IRC 1504(a)조에 따라 동일한 계열그룹의 계열사인 경우에도 100% 공제가 가능하다(이성봉 1999).

3. 배당소득 중복과세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가. 80% 지분율 기준의 임의성

현재의 세법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율은 90%이고, 지분율이 50%이상 80%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율이 60%이다.

주요 외국의 경우의 보면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영국과 독일(2000년 개정세법)은 전액 익금불산입하며, 프랑스는 배당수익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일본은 25%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그외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80%를 익금불산입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70%에서 100% 익금불산입한다.

〈표 2〉 외국의 법인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국 가	법인의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영국	100% 익금불산입
독일	100% 익금불산입 (2000년 개정세법)
프랑스	95% 익금불산입
일본	지분율 25%이상: 100% 익금불산입 25%미만: 80% 익금불산입
미국	지분율 20%미만: 70% 익금불산입 20%-80%: 80% 익금불산입 80%초과: 100% 익금불산입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다면, 지분율에 따라 차등 조정할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자회사 지분율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차등하고 싶다면, 80%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지분율을 곱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표 3〉 지분율에 따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에 대한 개선안

	현행규정		개선안 1	개선안 2
지분율	80% 초과	80%-50%	50%-100%	50%이상
익금불산입율	90%	60%	90%	배당수익*지분율

나.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배제

지주회사가 차입금 지급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이자×(차입금/총자산)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익금불산입을 배제한다. 부채 비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가 되기까지는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만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이고, 차입금이 총자산의 50%라면, 이자비용의 50%만큼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자율과 배당률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수익의 절반 가까이 익금불산입이 배제된다(〈표 4〉 사례 참조). 자회사 투자에 대한 배당률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 보다 낮아지면 익금불산입 배제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격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규정은 부채비율 100%이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4〉 사례: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배제

<table>
<tr><td colspan="2">•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이고,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주회사</td></tr>
<tr><td rowspan="2">자산: 투자자산 100억원
(A자회사주식: 50억원, B자회사주식:50억원)</td><td>부채: 차입금 50억원</td></tr>
<tr><td>자본: 자본금 50억원</td></tr>
<tr><td colspan="2">• 지주회사의 이자비용: 50억원×10%=5억원
•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50억원×10%+50억원×10%=10억원
①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모두 50%이상 80%이하인 경우
• 배당수익 익금불산입액: 10억원×60%-5억원×(50억원/100억원)=3.5억원
• 지급이자로 인한 익금불산입 배제율=2.5억원/6억원=41.6%
②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모두 80%를 초과하는 경우
• 배당수익 익금불산입액: 10억원×90%-5억원×(50억원/100억원)=6.5억원
• 지급이자로 인한 익금불산입 배제율=2.5억원/9억원=27.7%</td></tr>
</table>

다. 지분율 30%인 상장·등록법인의 배당소득 손금불산입 비율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포함되고(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산입되는 자회사의 범위(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지분율 30% 초과)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법 제18조의 2 제1항)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되고,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산입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사항은 입법상의 오류로 보여진다. 따라서 지분율이 30%인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산입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Ⅳ.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비용 문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수익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과 자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기타수익으로 구성된다. 자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기타수익은 경영지도료, 기술지도료, 자회사 관리비용 등으로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을 말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본 NTT사의 경우 기업집단 내의 자회사에 대하여 경리·세무·법무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일정액을 징수하였는데, 이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되었다(옥무석, 1999). 이러한 수익·비용의 적정성 문제는 자회사의 외부주주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세무상으로도 제기될 수 있다.

자회사가 부담하는 지주회사 관리비용은 실제 발생액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라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의 목적이 자회사의 관리이고 이러한 고유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회사에 부과되는 지주회사 관리비용의 세무상 인정문제와 비슷한 사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그룹에 속하는 계열법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룹전체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획실의 운영경비는 비용발생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그룹내의 각 법인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1264.21-2975, 1980. 9.26).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③ 프로야구단·프로축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직접 출자한 법인과 출자 또는 피출자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프로축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법인1264.21-2626, 1982.8.25).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지주회사 관련 과세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과세제도와 관련된 세법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조직의 탄력성 제고,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의 강

화, 위험의 분산과 차단 등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그 설립이 규제되어 오다, 1999년 2월 5일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였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이 100% 초과금지, 자회사 주식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이상 보유 의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여러가지 제한을 두었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으로 가스사업 관련 11개의 자회사를 두고있는 SK엔론, 서울·경기 지역의 케이블방송사 9개를 자회사로 두고있는 씨엔엠커뮤니케이션,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동양금융지주주식회사 등이 순수지주회사로 설립되었다. 또한 하나은행, 한빛은행, 한진그룹, 대신그룹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밝힌바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사항으로는 계열사간 주식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제도, 기업분할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제도,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중복과세의 조정문제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비용 인정문제가 검토되었다.

지주회사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 지분율 기준의 임의성이다.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다면, 지분율에 따라 차등 조정할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자회사 지분율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차등하고 싶다면, 80%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지분율을 곱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너무 엄격한 것 같다. 만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이하이고, 이자율과 배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수익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익금불산입이 배제된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가 되기까지는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부채비율 100%이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정확하게 30%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60%가 익금불산입되고,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

산입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분율이 30%인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90%가 익금불산입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회사가 부담하는 지주회사 관리비용은 실제 발생액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의 목적이 자회사의 관리이고 이러한 고유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박길준·임웅기·홍복기,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 지주회사의 금지와 그 규제완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9.

옥무석, "지주회사 세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1999.12.

이성봉,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발전방향: 주요선진국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연구 발표회 발표논문집, 1999.11: 118-319.

이우택, 지주회사의 유용성과 연결납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5호, 2000.2: 91-134.

조용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와 세무, 1999. 8:100-116.

최성근,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 11.

Chennells, L., A. Dilnot and N. Roback, A Survey of the UK Tax System, The Charted Institute of Taxation, http://www.tax.org.uk, 1999.

Gammie, Malcolm, The Future of ACT, The Charted Institute of Taxation, http://www.tax.org.uk, 1999.

KPMG Germany, Government announces "Tax Reform 2000", http://www.mondaq.com January 2000.

Tax Systems of Holding Compan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Kyu Eon Jung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Digit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ax systems of holding companies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If a holding company owned more than 80% of stocks issued of a subsidiary company, 90% of dividend revenue of the holding company is exempted from taxation. If a holding company owned less than 80% and more than 50% of stocks of a subsidiary company, 60% of dividend revenue of the holding company from that subsidiary is exempted from taxation. I think that the bisection by 80% criterion is unfair. So I suggest that the exemption rate must be equal or proportion to the equity ratio.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if a holding company has borrowings, the tax exemption rate on dividend revenue is decreased. However, the Fair Trade Act permits holding companies borrowings up to 100% of debt-to-equity ratio. So, I think that this rule must not apply when a holding company's debt-to-equity ratio is lower than 100%.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if a holding company owned just 30% of stocks of a subsidiary company which is listed, 60% of dividend revenue of the holding company is exempted from taxation. If a holding company owned more than 30% of stocks of a subsidiary company stock which is listed, 90% of dividend revenue of the holding company is exempted from taxation. This rule causes misunderstanding and confusing. So I suggest that this rule must be changed as follows. In case of a holding company owned just 30% of stock of a subsidiary which is listed, 90% of dividend revenue of the holding company must be exempted from taxation.

〈Key words〉 Tax Systems of Holding Companies, Doubl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Deferred Taxation of Capital Gains, Reconciliation of double Taxation